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상징적 폭력과 차별

김 정 규*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그들의 범죄에 주요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주된 분석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되었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가해 여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죄 빈도에 대한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2013년 실시된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그리고 거주환경이 나쁠수록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범죄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빈도의 경우에도 차별경험이 뚜렷한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차별경험을 많이 할수록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도 높고, 동시에 범죄의 빈도수도 더 많아졌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차별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상징적 폭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도하였다.

❖ 주제어 : 외국인 이주자, 이민, 범죄, 범죄피해자, 차별, 상징적 폭력

* 계명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미국학전공 부교수

I. 머리글

이 연구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그들의 범죄에 끼치는 하나의 주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는 최근까지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논쟁의 핵심은 외국인 이주자가 지역 공동체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토착 지역민들에게 위협적인 잠재적 범죄자이나 하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범죄학의 주된 주제 중의 하나였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소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는 그들이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학계든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 건 팽배해 있었다(Shaw and McKay, 1969). 말하자면, 외국인 이주자야말로 필요악으로서 사회갈등의 주범이라는 것인데, 최근의 이민과 범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흥미롭게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민자들은 기존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범죄를 줄이는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인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리가 경험적으로 검증되고 확산되고 있다(Hagan and Dinovitzer, 2008; Lee and Martinez, 2002; Lee and Rosenfeld, 2001; Martinez, 2002; Martinez and Lee, 2000; Sampson 2006; Wadsworth, 2010). 그러나 또 한편 유럽의 경우에는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율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해서 각 나라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주와 이민의 형태 등에 따라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율이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Solivetti, 2010).

사실 어느 사회이건 간에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외국인 이주자이든 토착 지역민이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에 관한 범죄 원인론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이 있고 그 연구들만큼이나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주자와 토착 지역민의 범죄를 비교했을 때 원인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주자와 토착 지역민이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인 이주자가 토착 지역민과는 달리 인종적,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 유발 원인도 토착 지역민과 다를 것이며, 그러한 원인을 파악하면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가

어떤 상황에서 더 자주 혹은 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게 되면 그곳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터전이지만 원래 그 곳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주자들은 이방인으로 구별된다. 짐멜(Simmel)에 따르면, 이방인으로서의 이주자들은 돌아갈 고향과 미래의 영토도 상실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짐멜, 2005). 이러한 이방인들의 자아 정체성은 고향을 향해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실존적 존재감을 부여해 줄 국가 혹은 민족과도 같은 초월적 존재를 상실한 사람들이다(Rundell, 2004). 한편 토착 지역민들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리는 이방인의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동화시켜 자신의 일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토해내기 전략을 통해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Bauman, 1997). 이러한 이방인으로서의 이주자의 모습과 그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며, 토착 지역민과의 상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과정은 부르디외(Bourdieu)의 개념적 틀을 사용해서 보면 보다 명확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자면, 이주자들은 그들의 삶의 장(field)을 새로운 국가로 옮긴 것이고,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토착 지역민의 장(field)안으로 들어간 것이다(Bourdieu, 1989). 그리고 그 사회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인으로서 이주자라는 새로운 신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토착 지역민과의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통해 지배-종속관계로 위치 지움 된다. 이주자들은 이미 고향으로부터 가지고 온 자신의 아비투스(habitus)를 새로운 장에 들여 놓게 되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던 토착 지역민의 아비투스와 경쟁관계, 혹은 적응과 갈등의 관계를 갖게 된다. 경쟁의 결과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새로운 장 안에서 피지배자의 지위에 위치 지워 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아비투스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에 순응하는 것이 이주자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한에 있어 지배-피지배관계 속에서 이주자들에게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

부르디외의 상징적 폭력의 개념은 일상행위에 각인된 보이지 않은 지배의 형태로 각각의 장에서 개인들의 관계성 속에 존재한다. 집단, 계급, 개인들은 언어, 신분, 지위, 관습과도 같은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적 폭력은 특히 지배계급의

사고방식이나 지배형태, 문화양식이 마치 사회의 자연스러운 질서인양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는 쉽게 인지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권력관계를 통해 부과되는 상징적 폭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과된다(Bourdieu, 1989). 권력관계에 얽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을 오인하거나 권력에 대한 공포 혹은 순응을 통해 상징적 폭력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지배와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파악되는 상징적 폭력은 명백한 물리적 힘이나 육체에 대한 폭력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의 도구로 어떠한 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상징적 영역으로 폭력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에 의해서 폭력의 대상자 혹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Bourdieu and Wacquant, 1992).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폭력의 영향은 광범위하게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그 크기는 강력하다.

이주자와 토착 지역민의 차이점은 바로 지배-피지배관계에 따른 상징적 폭력의 부과 여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이주자는 바로 지배-피지배 관계에서 상징적 폭력의 대상이 된다. 만약 외국인 이주자가 토착 지역민들과 다른 뚜렷한 범죄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상징적 폭력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주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은 편견과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징적 폭력의 특징이 비가시성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주자들이 자신에게 부과되는 편견과 차별을 인지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순응이고 또 하나는 저항이다. 저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기존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범죄는 그 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어떠한 경우에 상징적 폭력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인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차별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주자들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상징적 폭력의 한 형태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그들의 범죄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II. 이론적 논의

상징적 폭력의 개념은 사람들의 일상행위에 각인된 보이지 않는 지배의 형태로 불평등한 권력이 동의와 공모, 그리고 오인에 의해 비가시성의 틀이 지워져 있는 것이다. 상징적 폭력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데, 제도화의 메커니즘이나 지배의 재생산 관계가 유지되고 반복되는 것은 바로 상징적 폭력의 비가시성 덕택이다. 상징적 폭력이 비가시성을 띠는 것은 사회적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 언어와 소통, 농담, 접촉 등을 통해 일상적인 삶속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Bourdieu, 1998). 그러므로 폭력에 대한 상처가 일상화되어 있어 그 일상생활의 평범함이 상징적 폭력을 눈에 쉽게 띄지 않게 한다.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징적 폭력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 지배관계에 대한 저항이나 개선의 행위도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부르디외의 표현을 빌면 권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상징적 폭력에 의한 권력의 지배관계에 어떤 식으로 놓여있는지 모르고, 그것을 모르는 것조차도 모른다(부르디외, 2014). 그렇다면 상징적 폭력 아래 있는 피지배자는 권력의 틀 속에서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존재인가?

부르디외의 답은 적어도 상징적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렇다. 따라서 상징적 폭력을 인지하지 못하면 장 안에서의 폭력은 지속되고, 이것은 특정 상황에 이르면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든 사회공동체가든 자신의 장에서의 상징적 폭력을 행위자가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폭력에서의 해방이 시작된다. 그럼 상징적 폭력은 어떤 경우에 인지되며, 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저항은 어떤 경우에 활성화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징적 폭력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아비투스과 장이 불일치하여 갈등을 만들어 공모와 순응의 기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비투스과 장이 변화하게 될 때이다.

사회적 행위자들은 실제로 자신의 장에서 다른 사람 혹은 집단과 다양한 아비투스에 의한 실천행위들을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아비투스가 충돌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개방적인 숙의(deliberation)가 어려운 것은 이미 그러한 아비투스의 충돌과 상호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적 질서와 통념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장에 내재하고 있는 상징적 폭력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비투스나 장이 고정되어 있거나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아비투스는 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은 아비투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ourdieu, 1990). 즉, 장 안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아비투스는 만들어지고 정당성을 획득한 아비투스는 장 전체로 확장된다. 톰슨(Thompson)이 주장하듯 사회적 행위자들의 실천은 바로 이러한 아비투스와 장의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부르디외 2014: 431). 그러므로 사회적 행위자의 아비투스와 장이 어떻게 잘 조응하느냐에 따라 그의 행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아비투스가 그가 속해 있는 장에 잘 조응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는 그 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체가 됨과 동시에 장의 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는다(김현준·김동일, 2011). 바로 아비투스와 장의 상동성(homology)이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비투스와 장의 상동성이 부족한 경우, 아비투스와 장 사이에는 불일치가 일어나고 이러한 경우 기존의 지배적인 통념이 무엇인지, 혹은 내재된 상징적 폭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이에 도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실마리가 나타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의 아비투스가 사회적 공간에서 그에게 주어진 지위의 결과로 획득되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위가 다르다면 동일한 아비투스를 갖지 않는다(Ritzer, 1996). 사람들이 하나의 장에서 공통적인 맥락 속에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개인은 독특성을 가진다. 게다가 사람들은 하나의 장에만 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족, 회사, 학교, 친목모임, 지역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장에서 제 각각의 지위에 따른 아비투스를 가진다(Wacquant, 1998). 따라서 개인이 각각의 장에서 유사한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라는 장에서 가장이라는 지위에 부여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족을 대표하고 명령을 내리는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사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유사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면, 장이라는 활동무대가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다. 반면에 가족 안에서는 체통 있는 어엿한 가장이지만 직장에서는 말단 청소부라면 직장이라는 장에서의 아비투스와 가족이라는 장에서의 개인의 아

비투스는 확연히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장에 걸 맞는 아비투스에 금방 적응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장에서 적절한 아비투스를 갖고 상호작용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각 장마다 가지는 아비투스가 확연히 다를수록 사회적 행위자는 장과 아비투스의 불일치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고 따라서 상징적 폭력을 느끼거나 인지할 개연성도 더 높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다른 장에서 생성된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장에 들어갈 때도 일어난다. 예컨대 시골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자동차를 좋아해서 취미활동 동아리로 부잣집 아이들이 대부분인 스포츠카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와 새로운 장인 스포츠카 동아리의 장과는 상당한 정도로 불일치하게 되고 그 학생의 동아리 생활은 평탄하지 않으며 그 장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를 더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학생의 선택은 그 장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반발하거나 저항하게 된다.

아비투스와 장의 상동성의 문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이 말하는 지위 불일치(status inconsistency)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사람들의 사회적 계급은 부(wealth), 권력(power), 위세(prestige)의 위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 영역에서 사람들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 예컨대 회사의 사장이면, 부와 그에 걸 맞는 권력, 그리고 명성도 어느 정도 함께 갖는다. 청소부의 경우는 그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 영역의 위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렌스키(Lenski, 1954)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계급의 영역 중 가장 지위가 높은 것으로 사회적 위계를 최대한 확장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고 있는 타자들은 반대로 가장 낮은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 바로 지위 불일치를 가져온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위 불일치를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치적으로 더 급진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Lenski, 1954; Mateju and Kreidl, 2001).

그런데 아비투스와 장의 관계 속에 나타난 상징적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지위와 사회적 영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확장된 것으로써 역사적 경험이 내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이며 포괄적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위 불일치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아비투스과 장의 상동성이 낮은 경우 갈등이 발생하고 내재된 상징적 폭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다. 아비투스의 차이로 인한 상징적 폭력이 두드러지게 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적인 장과 공공의 장에서의 아비투스가 다를 경우, 그리고 둘째, 어느 특정한 장에서의 아비투스가 다른 장으로 그대로 이입되어 아비투스과 새로운 장이 불일치하게 될 경우이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경쟁하는 장은 다르고 사적인 장과 공공의 장에서의 개인의 아비투스는 다른 아비투스과 경쟁한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주자가 이주한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상징적 폭력을 어떻게 인지하며 그것이 실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외국인 이주자는 본국에서의 삶의 방식, 규범과 제도가 내재된 아비투스를 그대로 지니고 새로운 터로 이주해 온다. 그가 이주해 오기 전까지 본국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을 받아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지배자의 지위에 의해 부여된 아비투스는 가지고 있지 않다. 새로운 땅에서의 생활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사적인 영역이 가족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민족적 공동체에서 같은 국가 출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영역이라면, 공적인 영역은 사적 영역의 밖의 영역으로 주로 토착 지역민과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말한다. 그의 사적영역에서의 상호작용은 그가 본국에서부터 갖고 온 아비투스에 바탕을 두고 실천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은 이주자가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공공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으로 재조직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피지배자의 지위에 따른 새로운 아비투스가 공공의 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자. 그런데 가족이나 민족공동체와도 같은 사적 영역에서는 이러한 아비투스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인 아비투스가 유지되거나 재생산된다고 한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공공 영역의 아비투스과 사적 영역에서의 아비투스는 불일치하게 된다. 이때 사적 영역의 장에서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아비투스가 공공 영역에서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되지 않는다.

이같이 공공 영역의 장에서의 아비투스가 사적 영역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는

에는 부모의 직업적 지위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콘(Kohn)의 연구들에서 잘 나타나있다(1959, 1963, 1977). 그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공공의 영역에 속한 부모의 직업적 지위(계급)에서 얻어지는 성향이(부르디외의 표현에서는 아비투스), 사적영역인 자녀들의 교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층 계급 부모들은 그들의 직업이 주로 명령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에게 주어진 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권위에 잘 복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에게도 권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 그렇게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 이상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진다. 반면 전문직 중산층 이상의 부모의 경우 그들의 일터에서 강조되는 가치(아비투스)는 창의성이나 자기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에게도 더 자유로운 교육이 중요시 된다. 결국 자녀에 대한 훈육 방식도 하층계급은 더 엄격하게 매를 들고 권위적인 반면 중산층 이상의 경우 설득이나 말로 타이름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콘의 연구는 공공의 영역에서의 아비투스가 사적영역으로 그대로 전이되는 것을 보여준다.

콘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헤이건(Hagan et al., 1985, 1987, 1990)의 권력통제 이론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권력의 차이가 가족 안에서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녀의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이후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높아진 지위로 인해 가부장적인 관계가 약화되었다. 말하자면 공공의 영역에서의 남녀 지배관계에 대한 아비투스가 변화한 것이다. 권력통제이론의 가정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만약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할 경우 그 가족도 아내와 남편의 권력이 동등한 평등가족을 구성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전통적 사회에서처럼 남편의 지위가 사회적 영역에서 높은 반면 아내의 경우 직업이 없든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 가부장적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식에 대한 통제도 평등한 가족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행해지므로 동일한 부모의 통제를 받는 남녀 자녀들의 이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부장가족의 경우, 공공의 영역에서 생성된 가부장 아비투스가 자녀의 통제 방식에도 그대로 이전되어 가부장 권력의 주된 대상인 여자, 즉 딸에게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아들의 경우 일탈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 가족의 유형을 띤 가족에서는 아들과 딸의 일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권력통제이론이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산업화 이후 왜 여성의 범죄가 늘어나고 남성과 여성의 범죄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해이건의 연구 역시 공공의 장인 사회에서의 가부장 관계의 아비투스(a)가 사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유입되어 작용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 다시 외국인 이주자의 아비투스의 충돌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장은 다양한 아비투스가 경쟁하는 곳이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아비투스에 따른 인식변화는 다르게 나타난다(Bourdieu, 1989). 따라서 공공 영역의 장에서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이주자의 종속관계의 아비투스가 사적인 영역으로 전이될 때 외국인 이주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 영역의 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 공공의 영역에서 외국인 이주자는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인 장에서 새로운 실천을 실행하고 배우며 이방인의 지위에 부여된 피지배자의 아비투스를 갖게 된다. 그러나 가족이나 민족공동체에서는 여전히 평등한 아비투스가 수행 될 때 새로운 아비투스와 전통적인 아비투스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획득한 새로운 아비투스와 사적 영역에서의 전통적인 아비투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긴장의 정도는 더 커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아비투스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공공영역의 장에서의 지배-피지배 관계 속에서 내재된 차별이라는 상징적 폭력을 지속가능하게 한 오인과 순응의 유지기제가 깨어지게 된다.

만약 외국인 이주자가 아비투스와 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토착지역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아비투스를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지배-피지배 관계는 재강화 되고 이주자에 대한 상징적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휘된다. 그러나 이주자가 자신의 사적영역에서의 아비투스, 즉 자신이 본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평등의 아비투스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갈등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의 아비투스 실행은 지역 토착민의 아비투스 혹은 새로운 장에서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저항이므로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역 토착민의 아비투스와 충돌하게 되어 갈등을 일으키거나, 변화된 장에 걸 맞는 자신

의 아비투스스의 변화와 적응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아비투스스를 이전하면서 모순적 경험을 하게 될 때 바로 상징적 폭력을 인식하게 되고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이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의 차별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주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와의 차이가 더 커지고 상징적 폭력을 더 쉽게 인지 할 뿐 아니라 새 터전의 장의 질서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터전의 제도와 규범을 어기는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설을 염두에 두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기로 하자.

Ⅲ. 연구방법

1. 자료와 분석대상

이 연구는 2013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실태에 관해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김대근 외, 2014). 조사대상자는 불법체류외국인 400명과 합법체류 외국인 400명 모두 800명인데 이 연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과 합법체류외국인 자료를 모두 합쳐서 총 80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인근로센터와 외국인복지/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연결이 된 157개소 중에서 최종 28개소를 선정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사는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합법체류자는 직접 설문지를 해당 센터 내에서 작성하였고, 불법체류자는 센터에서 이들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센터에 배부하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설문 조사를 하였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여 조사대상자가 편한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이 24%, 인도네시아 12.5%, 필리핀 12.4%, 타이 10.4%, 베트남 9.5% 순으로 미국이나 서구 유

럽, 일본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 온 이주자들이라기보다는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공장노동자, 건설, 수산업, 축산업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대분이 육체노동자였고, 전문직이나 사무직 종사자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다. 한국어 구사능력은 전혀 하지 못하거나 별로 못한다는 사람이 40%를 넘는 반면, 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어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체류기간과 한국어 능력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단순히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한국어가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화적 동화가 단순히 체류기간이 길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2. 측정

주요 변수들은 <표 1>에 측정 문항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주요한 점들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인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가해 행위는 절도, 사기, 폭행 등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없었다’, ‘1-2번’, ‘3-4번’, ‘5-6번’, ‘7번 이상’과 같이 5등급의 범주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중 83.8%가 한 번도 범죄 가해경험이 없다고 답변해서 종속변수가 비선형성을 띠므로 범죄경험이 없는 사람은 0, 범죄경험이 있는 사람은 1로 이분형 변수로 재구성하여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따른 한편, 범죄가해자만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범죄가해의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범죄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 후 범죄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극단치가 주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범죄가해의 값이 10이 넘는 경우 모두 10의 값을 부여하였다.

범죄피해는 외국인 이주자가 지난 1년 동안 사기, 절도,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피해를 얼마나 당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범죄피해 측정문항 중 폭행피해에 대한 것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폭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가해와 피해에 있어서 쌍방이 같이 행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독립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측정치에서 제외하였다. 단속 후 처우인지는 경찰이나 공무

원 등의 단속을 받았을 때 추후 자신에게 행해질 처우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단속 후 자신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거주환경은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터전이 환경적으로 열악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한 문항들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주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차별경험은 외국인 이주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은 것으로 차별의 형태를 5가지로 나누어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측정하였는데 12이상의 값은 극단치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12로 값을 주었다.

<표 1>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외 독립변수로서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부호화 하였다. 연령은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두 자리 수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체류자자격은 합법적 체류자는 0, 불법체류자는 1로 부호화 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5등급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다. 체류기간은 한국에서 실제 체류한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은 개인의 한 달 평균 소득을 측정하는 것으로 최하 50만원 미만에서 최대 500만원 이상까지 9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1〉 주요변수들과 측정문항

변수	문항	α
범죄가해	귀하는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물건이나 돈 훔치기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 가로채기 배우자 때리기 다른 사람 때리기(가족이외의 다른 사람) 협박이나 폭행하여 돈이나 물건 뺏기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성폭행하기	.887
범죄피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아래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신분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돈을 가로채 간 적이 있다. 누군가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로채 간 적이 있다. 누군가 가족이나 친지를 초청해 준다고 하고 돈을 가로채 간 적이 있다. 누군가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고 돈을 가로채 간 적이 있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누군가에게 강간이나 기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610

변수	문항	α
단속 후 처우인지	귀하가 만약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고립될 것이다. 보호소에 수용될 것이다. 장기간 구금될 것이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884
거주환경	다음은 귀하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동네(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주위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내버려둔 빈집이나 빈터가 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불량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가 있다. 밤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십대청소년들이 떼 지어 몰려다님을 자주 볼 수 있다.	.853
차별경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모욕, 위협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길거리 버스, 지하철 등에서 모욕, 위협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음식점 등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혹은 방)을 얻는 것을 거부당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내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844

IV. 분석

<표 2>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64%, 여성은 36%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 연령은 1947년생이 가장 고령자였고 1995년생이 가장 어린 조사대상자였다. 평균 출생연도는 1978년생으로 조사연도를 기준으로 약 35세 전후이다. 학력은 평균적으로 고졸 또는 그 미만의 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졸(중퇴)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를 넘어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대졸(중퇴)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28%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상당한 정도 있었다. 소득수준의 평균값 3.29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버는 수준을 나타낸다. 소득수준은 그리 높지 않아서 대부분이 월 200만원 미만을 벌고 있었고, 1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이 20% 가까이 있었다.

한편, 체류기간의 평균은 61개월 정도 된다. 거주환경의 평균값 14.62는 중간보

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내므로 외국인 이주자들의 거주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과 거주환경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자인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형편이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속 후 처우인지의 평균값 11.54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신이 경찰이나 공무원에 단속 당했을 경우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의 평균값 7.43은 범죄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 외국인 이주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대상자 중 75% 정도가 범죄피해 경험이 없었고, 15%가 한 번 정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당한 경험의 평균 점수 6.09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평균 1번 정도 차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37%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차별이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번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전체 중 13% 정도였다. 범죄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범죄가해 빈도는 한번이 38%, 두 번이 22%, 세 번이 13%, 그리고 네 번이상이 27%를 차지하였다.

〈표 2〉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별	0	1	.64	.479
연령	47	95	77.81	9.692
체류자격	0	1	.50	.500
교육수준	1	5	2.83	1.032
소득수준	1	9	3.29	1.216
체류기간	1	264	60.56	45.358
거주환경	6	30	14.62	5.056
단속 후 처우인지	4	20	11.54	4.690
범죄피해 경험	7	13	7.43	.906
차별경험	5	12	6.09	1.91
범죄가해여부	0	1	.13	.335
범죄가해빈도	7	10	8.30	1.233

<표 3>은 종속변수인 범죄가해의 여부와 범죄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빈도 각각에 대해서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남자는 여자보다 범죄가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많고, 범죄가해자 중에서도 남성의 경우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연령과의 관계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범죄가해 경험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범죄의 빈도와 연령과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류자격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합법체류자 보다 범죄 경험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체류자격과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불법체류자의 경우 합법체류자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놓고 보면 범죄의 빈도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범죄가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 범죄가해자의 범죄빈도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체류기간이 길수록 범죄자가 될 확률도, 범죄를 더 자주 저지를 확률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자들이 좋지 않은 거주환경에 처해 있을수록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질 뿐 아니라 범죄의 횡수도 더 많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단속 후에 자신이 처할 형편에 대해서 더 비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범죄가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 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빈도도 더 높았다. 단속 후 처우인지가 비관적이라는 것은 토착 지역민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 이주자라는 지위로 인해 자신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므로 차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범죄가해와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범죄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범죄가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고 범죄 빈도도 더 많았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가 범죄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되면 화를 내거나,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스스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피해자에게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범죄피해에 대해서 범죄를 함으로써 보상받거나 대응하게 된다(이윤호, 2007). 외국인 이주자는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도 마땅히 보상받

을 길도 토착 지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다고 느낄 수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으므로 그것이 범죄가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차별경험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범행을 할 가능성도 높고, 또 빈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한 가설이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그들을 범죄자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독립변수는 단속 후 처우인지, 범죄피해, 그리고 차별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단속 후 처우가 차별에 대한 인지라고 한다면, 범죄피해자로서의 경험은 외국인 이주자가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고 범죄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경험이야말로 실제 일상생활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차별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변수들이 다른 독립변수들과 함께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성별	연령	체류 자격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체류 기간	거주 환경	단속후 처우	범죄 피해	차별 경험
범죄가해 (전체)	.136**	-.130**	.101**	-.205**	.069	.089*	.271**	.136**	.390**	.285**
범죄빈도 (가해자)	.120**	-.063	.058	-.136**	.044	.073*	.243**	.102**	.426**	.343**

*p < .05, **p < .01

<표 4>는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범죄가해의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한 결과와 범죄가해자만을 대상으로 범죄빈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범죄가해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은 종속변수가 범행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눈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속변수인 범죄빈도의 경우에는 범죄가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의 빈도수를 측정한 서열적 변수이므로 일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범죄가해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델1은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경험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고, 모델2는 직접적인 피해나 차별을 경험한 것을 측정한 변수인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경험을 모두 회귀식에 넣어서 각 독립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의 유무를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범죄가해 모델1의 경우를 살펴보자. 독립변수들 중 성별, 교육수준, 체류기간, 그리고 거주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쳤다.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범죄가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범죄자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남성이 더 많이 범죄하고, 특히 길거리 범죄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범죄율이 더 높다. 거주환경이 나쁠수록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도 토착 지역민의 일반적인 범죄현상과 요인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외국인 이주자는 거주환경이 대체로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좋지 않은 지역 사회의 환경이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회해체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haw and McKay, 1969).

한편, 체류기간이 길수록 범죄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민과 범죄에 관련한 서덜랜드(Sutherland)의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덜랜드는 이민자의 이주 자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Hagan and Dinovitzer, 2008). 그것보다는 이민자가 그 사회에 적응하면 할수록 그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적 문화에 동화되게 되고 따라서 그 사회에 적응과 동화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된 사람일수록 폭력적인 범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그러나 서덜랜드의 주장은 미국문화의 폭력성이 이주자들 본국의 문화가 가진 것보다 더 높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주자들 본국의 문화보다 폭력성이 더 높은 문화인지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서덜랜드의 주장이 한국에는 크게 뚜렷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국인 이주자가 오랜 기간 체류할수록 주위환경과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에 따른 범죄의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 또 한편, 가장 익숙한 곳에서 범죄 한다고 하는, ‘범죄자는 낯선 곳에서 범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아니면 체류가 길수록 차별이나 편견 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그러한 것이라는 설명이 더 적합할 듯하다.

연령이 많고 적음, 그리고 체류자격이 합법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이나, 소득수준의 정도, 그리고 단속 후 처우 인지는 다른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범죄 위험성을 일반 대중들이 높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체류자격이 범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불법체류자는 곧 범죄자라는 인식이 대중적 오해에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경험을 함께 다룬 범죄가해 모델2를 살펴보자. 모델1과 비교하여 체류기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것은 범죄피해나 차별경험을 하게 되면 체류기간의 길고 적음에 따른 영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체류기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류기간동안 실제적인 차별을 경험했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모델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던 성별, 교육수준, 거주환경의 변수들은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회귀식에 추가로 다룬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경험은 둘 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범죄피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베타값 1.878을 볼 때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도 가장 크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가해자로 되는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복수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때 그 복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복수의 대상은 자신을 가해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1984년 미국 뉴욕 범죄율이 아주 높은 시기에 지하철에서 일어난 고에츠(Goetz, Bernhard) 사건¹⁾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고에츠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가 범죄의 피해자였고,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사법적인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자, 스스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한 채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나자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고에츠가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 불법총기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에는 이미 복수

1) 고에츠는 뉴욕 지하철에서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공권력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되지 않자, 스스로를 지키기로 하고 불법 총기를 지니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흑인 아이들이 돈을 요구하자 총으로 네 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5발의 총을 발사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그는 불법무기 소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해 죄는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판결을 한 배심원 중 6명이 길거리 범죄의 피해자였다.

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지난 번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외국인 이주자의 경우도 고에츠와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다. 새로운 터전의 지배-피지배의 장(field)에서 피지배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이주자는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범죄 피해에 대한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외국인 이주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럴 때 자신에게 부여되어 오던 상징적 폭력을 인지하게 되고 여기에 저항한다. 바로 이 저항의 방법 중 하나가 지배-피지배관계의 기존의 장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범죄가해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많은 사람은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두에서 제시한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가 차별을 인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터전에서 토착 지역민과의 상호관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과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왜냐하면 이주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적어도 자신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차별에 대한 경험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아비투스과 새로운 터전에서 토착 지역민과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장이 불일치할 때 상징적 폭력이 인지되는 것은 바로 차별을 느꼈을 때이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터전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장의 질서에 저항하게 되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형태가 범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범죄가해자의 범죄빈도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범죄가해 여부를 넘어 이미 범죄가해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독립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더 많이 혹은 적게 범죄를 하느냐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모델1은 직접적인 차별과 관련된 변수들을 제외한 회귀식이고 모델2는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경험을 회귀식에 모두 포함시킨 결과이다. 모델1의 경우 어떠한 독립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미 범죄가해자가 된 사람들이 범행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해여부에 영향을 끼쳤던, 성별, 교육수준, 체류기간, 거주환경 등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거주환경이 나쁘면 범죄자가 될 확률은 높지만, 이미 범죄자가 된 다음에는 범죄를 더 많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거주환경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모델2를 살펴보면, 새로 회귀식에 추가한 차별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성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 외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서 모델1과 동일하였다. 차별경험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띤 것은 이미 범죄가해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을 평소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잦은 범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크고 동시에 차별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범죄의 빈도수도 더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범죄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범죄피해 경험의 영향력이 범죄빈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범죄가해자가 되기는 쉽지만, 범죄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범죄피해 받는 만큼 비례해서 자신도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차별경험을 회귀식에 넣었을 경우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남녀의 차별경험을 통제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차별경험이 같다고 했을 때 가해빈도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은 존재하지만, 차별경험의 상이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범죄를 더 많이 한다는 성별의 효과를 무력화 시킬 정도로 범죄빈도와의 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범죄가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범죄빈도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범죄가해(전체)		범죄빈도(범죄가해자)	
	모델1 n=691 B (Exp(B))	모델2 n=668 B (Exp(B))	모델1 n=86 b (Beta)	모델2 n=84 b (beta)
성별	1.274** (3,576)	1,383** (3,988)	.379 (.126)	.693* (.235)
연령	-.013 (.987)	-.022 (.978)	.019 (.150)	.003 (.026)
체류자격	.182 (1,199)	.271 (1,311)	-.302 (-.119)	-.369 (-.144)
교육수준	-.440** (.64)	-.515** (.597)	.257 (.231)	.163 (.146)
소득수준	-.038 (.963)	-.119 (.888)	.031 (.036)	.020 (.024)
체류기간	.008* (1,008)	.006 (1,006)	.004 (.152)	.001 (.040)
거주환경	.151** (1,163)	.120** (1,127)	.025 (.119)	.021 (.097)
단속 후 처우인지	.003 (1,003)	-.026 (.974)	.014 (.056)	.008 (.030)
범죄피해 경험	-	.630** (1,878)	-	.125 (.151)
차별경험	-	.319** (1,376)	-	.186** (.393)
R-square	-	-	.103	.264
F	-	-	1,116	2,656**
Model Chi-Square	103,782**	164,525**	-	-

*p < .05, **p < .01

V. 맺음말

국가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글로벌 또는 세계화가 주창되는 오늘날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새로운 사회의 내재화된 문화적 규범과 믿음에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구조에서의 저항방식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기존 사회의 지배와 억압과 압력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각인되고 유

지되는지,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상징적 폭력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하여 먼저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부여된 상징적 폭력이 차별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차별이 이주해온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저항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범죄행위와 유효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이주자가 범죄가해자가 되도록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교육수준, 거주환경, 범죄피해 경험, 차별경험 등의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연령, 체류자격, 소득수준, 체류기간, 단속 후 처우인지 등의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 거주환경이 나쁠수록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범죄원인론 등에서 지적해 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 이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인들인 단속 후 처우에 대한 차별적 인식, 범죄피해의 경험 그리고 차별경험의 독립변수 들 중에서 범죄피해 경험과 차별 경험은 뚜렷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단속 후 처우인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단순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행위를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직접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하게 될 때에야 그것이 범죄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범죄피해를 당해서 느끼는 고통은 토착 지역민들의 범죄피해의 경험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고통과 더불어 그들에게는 외국인 이주자이기 때문에 부여되는 피해의식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피해는 더 큰 고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거나 아니면 완전 자포자기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윤호, 2007: 179). 합법적인 공간인 일상의 생활이 일어나는 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지배-피지배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기존의 질서 속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주자들은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혹은 피

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대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경주의(vigilantism)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스스로의 사법정의 실현으로써의 복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해의 가능성과 범죄가해자의 범죄빈도에 모두 영향력을 끼쳤다. 말하자면 생활에서의 차별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더 높고, 범죄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차별을 받으면 받을수록 범죄의 빈도도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민자와 토착 지역민들과의 지배-피지배 관계는 각각의 전통적인 역할과 규범의 장에서 이민자와 토착 지역민들이 서로 다른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민자에 대한 토착 지역민들의 반감은 그들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방식, 그리고 규칙과 규범을 이민자들이 위반하는 것, 말하자면 이민자가 토착 지역민들의 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 아비투스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토착 지역민들의 아비투스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규범과 제도의 장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이 일어나고 토착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던 아비투스가 자연스럽게 이민자의 아비투스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토착 지역민들의 아비투스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착 지역민들은 그들의 우세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의 아비투스를 비난, 경멸하는 수단으로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상징적 폭력의 형태는 다양한 낙인이나 오점 등으로 부여되고 이러한 것을 이주자들이 생활 속에서 인지하게 될 때 바로 차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터전을 마련한 장에서 지배계급의 아비투스에 대한 도전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그것에 순응하며 살아가지만, 지배계급의 아비투스와 자신의 아비투스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기존의 장의 질서 속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대응하게 되고 그러한 대응 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대응도 더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범죄의 빈도수도 거기에 비례하게 된다.

세계 곳곳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범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국가의 형태, 이민정책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다. 김정규와 신동준은 미국과 유럽의 각 나라의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의 관계성을 비교하면서 외국인 이주자 범죄율이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공통된 특징들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그 중 외국인 이주자들의 사회적 긴장 문제와 관련하여 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정도, 민족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이주해 온 국가의 범죄 수준을 들고 있다(김정규·신 동준, 2011). 외국인 이주자에게 차별과 편견이 심하다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긴장을 높이고 이것이 각 국의 범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다만 민족공동체가 활성화 된 나라의 경우 민족공동체가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며,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범죄수준이 높은 나라라면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이주자가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해 긴장이 높아진다고 해도 그것을 해소할 만한 민족공동체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마땅한 공간도 부족하다. 더구나 미국 등의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의 범죄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그 수가 미미할 지라도 쉽게 포착되어 사회문제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은 여러 미디어 등을 통해서 확대, 반복 재생산 되어 그것이 다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구조로 갈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러는 한 한국에서의 외국인 이주자의 범죄는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적인 국가적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대근, 전영실, 이정민, 주현경, 김정규(2014).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김정규, 신동준(2011). “이민사회와 범죄: 쟁점과 전망”, 「사회이론」 봄/여름 통권 제39호.
- 김현준, 김동일(2011). “부르디외의 성찰적 사회학과 순수성의 정치: 사회학장의 자율성과 사회적 참여를 위한 사회학자의 이중적 상징투쟁”, 「사회과학연구」 제19권 2집: 38-75.
- 부르디외, 삐에르(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下」(최종철 옮김) 새물결 출판사.
- 부르디외, 삐에르(2014). 「언어와 상징권력」(김현경 옮김), 나남.
- 이윤호(2007). 「피해자학」, 박영사.
-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 Bauman, Z. (1997). *Post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1990).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Press.
- Bourdieu, P. (1989). “Social Space and Symbolic Power”, *Sociological Theory*, 7: 14-25.
- Bourdieu, P.(1998).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Bourdieu, P., Wacquant, L.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Cambridge: Polity Press.
- Hagan, J., Gillis, A. R. and Simpson, J. (1985) “The Class Structure of Gender and Delinquency : Toward a Power-Control Theory of Common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151 - 1178.
- _____. (1987). “Class in the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788 - 816.
- _____. (1990). “Clarifying and Extending Power-Control Theory”, *American*

- Journal of Sociology*, 95: 1024-1037.
- Hagan, J., Levi, R. and Dinovitzer, R. (2008). "The Symbolic Violence of the Crime-Immigration Nexus: Migrant Mythologies in the Americas", *Criminology & Public Policy*, 7(1): 95-112.
- Kohn, M. L.(1959). "Social Class and the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352 - 366.
- _____. (1963). "Social Clas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 Interpre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8: 471 - 480.
- _____. (1977).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2nd 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M. T. and Martinez, R. Jr. (2002). "Social Disorganization Revisited: Mapping the Recent Immigration and Black Homicide Relationship in Northern Miami", *Sociological Focus*, 35: 365-382.
- Lee, M. T. and Rosenfeld, R. (2001) "Does Immigration Increase Homicide? Negative Evidence from Three Border Cities", *The Sociological Quarterly* 42: 559-580.
- Lenski, G. (1954).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b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 405-413.
- Martinez, R. Jr. (2002). *Latino Homocide: Immigration, Violence and Community*, New York: Routledge Press.
- Martinez, R. Jr. and Lee, M. T. (2000). "On Immigration and Crime", In G. LaFree(ed.). *Criminal Justice 2000: The Changing Nature of Crime*, 1: 485-524.
- Mateju, P. and Kreidl, M. (2001). "Rebuilding Status Consistency in a Post-Communist Society: The Czech Republic."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14, 1, March: 17-34.
- Ritzer, G. (1996). *Sociological Theory*, Singapore: McGraw Hill.
- Rundell, J. (2004). "Stranger, Citizens and Outsiders: Otherness, Multiculturalism

and the Cosmopolitan Imaginary in Mobile Societies”, *Thesis Eleven*, 78: 58-101.

Sampson, R. J. (2006). “Open Doors Don't Invite Criminals: Is Increased Immigration Behind the Drop in Crime?” *New York Times* March 11:A27.

Shaw, C. R. and McKay, H. D. (1969).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olivetti, L. M. (2010). *Immigration, Social Integration and Crime: A Cross-Nation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Wacquant, L.(1998). “Pierre Bourdieu”. In R. Stones (Ed.), *Key Sociological Thinkers*: 215-229, London: Macmillan Press.

Wadsworth, T.(2010). “Is Immigration Responsible for the Crime Drop? A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Changes in Violent Crime Between 1990 and 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91(2): 531-553.

Foreign Migrants and Crime: Symbolic Violence and Discrimination

Kim Jeong-gyu*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migrants on their crime. This study deals with two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one is the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ies of foreign migrants, and the other is the frequency of criminal activities of foreign criminals. Data for this study came from a sample of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 of foreign immigrants conducted in 2013.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education and living environment of foreign migrants affect the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ies of foreign migrants. Especially, foreign migrant victims of crime are more likely to involve criminal activities. Also, experiencing more discrimination is more likely to turn foreign migrants into criminals. For foreign criminals, people who have more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 These results supported research hypotheses in terms of criminal activities of foreign migrants as reactions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hese results are discussed focusing on Bourdieu's theory of habitus and symbolic violence.

❖ Keyword: Foreign Migrant, Immigration, Crime, Criminal Victim, Discrimination, Symbolic Violence

투고일 : 5월 20일 / 심사일 : 6월 19일 / 게재확정일: 6월 19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meric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